

2012년도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2012. 8.





제 출 문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품질개선 컨설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이 총 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연 구 원	송 학 준, 배재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연 구 보 조 원	이 대 은,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이 혜 미,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석사과정 문 지 효,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연구원
통 계 청	김 경 용, 통계청 품질관리과 사무관 윤 은 경, 통계청 품질관리과 주무관

### 주요 자문위원

권 태 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 정책정보통계센터 책임연구원
박 근 화, 한국문화정보센터 통계개발부 부장
윤 승 현, 한남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전 진 영, 한국문화정보센터 통계개발부 책임
조 한 석,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진 수 남,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장
최 승 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 정책정보통계센터장
서 만 영, 통계청 통계기준팀 사무관



## 요약문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주제어	관광산업 특수분류
연구기간	2012.04.25 ~ 2012.08.17
연구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구성	책임연구원 : 이 충 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연 구 원 : 송 학 준, 배재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연 구 보 조 원 : 이 대 은,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이 혜 미,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석사과정 문 지 효,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연구원 통 계 청 : 김 경 용, 통계청 품질관리과 사무관 윤 은 경, 통계청 품질관리과 주무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관광산업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 또한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도 세부 분류별 품목 예시 및 포괄범위(제외 항목)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해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업분류 관련 문헌을 통해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함. 구체적으로 관광관련 국내분류(KSIC,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및 국제분류(ITS(2008), ISIC Rev.4.0, CPC Ver.2)를 참고하여 통합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통합표를 토대로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선정 기준을 수립함. 선정 기준에 따라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작성한 뒤, 이 분류체계의 논리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정부, 관광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함.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다른 산업의 특수분류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관광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을 4개 영역(핵심 관광산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으로 재분류함. 또한 관광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분류의 논리성을 확보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의 분류를 통해 정부정책이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또한 향후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이용하여 실제로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함.	



## 차 례

제 1 장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 개요	1
1. 관광의 정의	2
2. 관광산업의 정의	3
3.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재구축 배경	3
4.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재구축 주요 원칙	5
5.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재구축 과정	6
6.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재구축의 주요내용	10
제 2 장 관광산업 특수분류 항목표	11
제 3 장 분류항목명 및 내용 설명	21
1. 4개 산업분류 소개	22
2. 분류관련 용어 해설	23
3.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 (1): 핵심 관광산업	25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 (2): 상호의존 관광산업	43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 (3): 부분적용 관광산업	47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 (4): 관광 지원산업	53
제 4 장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활용방안	57
1.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컨설팅의 의의	58

2.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조사 활용방안 .....	58
3. 관광산업 표본틀 구축 방안 .....	59
4. 「관광산업 기초통계 조사」에의 활용 방안 .....	60
5. 기타 활용방안을 위한 검토사항 .....	60
[부록 1] 국내·외 분류 참고문헌 .....	63
[부록 2] MICE 관광산업 .....	65
[부록 3] 의료/한방의료 관광산업 .....	74
[부록 4]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간 비교 ..	77
<참고문헌> .....	83



## 제 1 장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 개요



## 제 1 장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 개요

### 1. 관광의 정의

-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ravel Organization)(1982)는 관광을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업무, 친구·친지방문,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이주, 취업 제외)으로 자국을 떠나 24시간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 목적지를 방문·체재하는 행위”로 정의함.
- Goeldner & Ritchie(2006)에 따르면, 관광이란 “관광객, 관광시설 공급자, 지역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관광자원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과정, 활동, 결과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관광학회(2009)에서는 관광을 “개인이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관광대상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즐기는 여가활동의 한 형태”로 정의함.
- 위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을 “한 개인이 한정된 기간(1일~1년 이내)동안 일상적인 거주지를 떠나 타국이나 타지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관광활동(휴가/위락, 스포츠, 사업·업무, 친구·친지방문,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즐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광객, 관광사업체(숙박업, 쇼핑업, 식음료업, 관광교통업 등), 관광지 정부, 지역사회, 관광자원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활동들의 총체”로 정의하고자 함.
- 한편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개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그 역할에 따라 4개 부문(핵심,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으로 대분류 하였는데, 정확한 산업분류를 위해 다양한 관광활동을 우선적으로 핵심부분과 기타부분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2012)는 관광활동을 관광여행(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순례 등) 부분과 기타여행(단순가족/친지방문, 비즈니스나 출장 등

업무상 목적, 교육/훈련/연수 등)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고자 함.

## 2. 관광산업의 정의

- 일반적으로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되며,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통계청, 2008).
- 따라서 관광산업은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쇼핑, 식음료, 숙박, 교통, 위락 등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위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산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현상이 관광객의 형태와 소비유형에 따라 교통, 숙박, 식음료, 오락, 쇼핑 등 의 기존산업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광산업의 범위와 정의 등을 현존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3.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구축 배경

- 관광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관광산업의 분류체계를 그들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 및 재분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통합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

### 가.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의 한계점

- 현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경제통계 위주의 UN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를 준용하여 문화체육 및 관광산업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 산업의 정확한 범위와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도 세부 분류별 품목 예시 및 포괄범위(제외 항목)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아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나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기초하여 조사를 실시 할 경우 현존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모집단이 관광산업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음.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는 음식점과 주점업을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명명하여 이를 한식, 중식, 일본, 서양, 기타 외국인으로 세분화하였고, 주점업의 경우에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모든 음식점을 관광과 관련짓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됨.
  - 숙박시설도 비슷한 상황으로 모든 숙박시설을 관광산업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펜션, 레지던스 호텔 등도 관광 숙박시설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는 핵심영역,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는 부분적용 영역, 영향력은 적어도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영역 등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세계적인 관광추세 및 우리나라 고유의 관광을 포괄하는 분류체계 필요성 증대**

- 교통과 기술 발달로 관광산업이 국제화되고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다른 나라들의 관광산업 분류체계와 호환 가능한 분류체계가 필요해짐.
- 또한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광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내·외 관광산업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분류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4.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재구축 주요 원칙

### 가. 국내·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수립<sup>1)</sup>

-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RTS(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ISIC Rev. 4.0(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ion 4.0), CPC Ver. 2(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Version 2)를 참고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우리나라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63년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9차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KSIC은 통계적 목적뿐만 아니라 행정 및 법령 등에서 산업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 따라서 KSIC에서 관광 관련 산업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특수 분류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분석 영역임.
-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타 산업 특수분류체계와의 통일성을 위해 4개 영역(핵심 관광산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재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나. 수요와 공급측면을 고려한 분류체계 수립

- 관광산업을 분류하는데 있어 관광과 관련하여 구입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관광 활동과 관광지출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문화체육관광부, 2010), 관광산업을 주로 수요측면에서 분류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급측면(시설)을 고려하고자 함.

1) 참조한 국내·외 분류체계 참고문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 다. 각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논리적인 분류체계 수립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수반함.
- 따라서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관광현상을 관찰하면서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관광 산업을 분류하되 분류된 하위 산업에 대한 정의, 예시, 제외사례 등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광산업과 관련된 학계,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과학적인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5.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구축 과정

### 가. 신규 관광산업의 특수분류체계 작성

- 기존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새롭게 분류하여 신규 관광산업의 특수분류체계를 작성 함.
- 이렇게 재분류한 이유는 관광산업이 전적으로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핵심 관광산업이 있는 반면,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으로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 지원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임.
- 예를 들면, 하나의 업종(예: 숙박업)이 관광산업에 속할지라도 세부업종의 특성에 따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관광업종(예: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적용될 관광업종(예: 청소년 수련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논리적인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적용되는 세부업종들을 우선적으로 핵심 관광산업에 포함시킨 후, 나머지 세

부업종들은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정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으로 세분하였음.

-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1) 관광진흥법,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관광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관광지나 관광특구에 위치한 사업체인지 여부 등임.
- 예를 들면, 같은 숙박업이라도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고 중요성이 높으므로 핵심 관광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증제(굿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모텔업은 핵심 관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인증되지 않은 모텔업은 부분적용 관광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관광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마련하였음.

#### **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국내·외 관광산업 분류에 근거하여 검토 및 진단**

-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수행하는데 있어, 우선 KSIC과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국내기준) 및 IRTS (2008), ISIC Rev. 4.0, CPC Ver 2(국제기준)를 참고하여 통합표를 작성하였음.

**<표 1-1>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선정 기준**

ISIC-CPC (IRTS)	한국문화정보 센터 선정*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선정 및 고려
○	○	○	선정
○	○	X	고려(High)**
○	X	○	고려(High)**
X	○	○	고려(High)**
X	○	X	고려(Medium)**
○	X	X	고려(Medium)**
X	X	○	비고려
X	X	X	비고려 (MICE, 의료관광은 부문은 별도로 고려)

주1) IRTS(ISIC-CPC 연동)에 기준하여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선정 또는 고려로 구분.

주2) 기호는 우선 고려사항으로 제시.

○: 해당분류에 존재, X: 해당분류에 존재하지 않음.

\*: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관계된 산업을 분류해 놓은 것을 참고함.

\*\*: 자문회의를 통해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에 포함할 산업을 결정.

- 통합표를 토대로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관광의 산업적 위치를 규명하고, 현재 국내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추가 또는 제외되어야 할 부문을 선정함.

#### **다. 국내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KSIC과의 연계**

- 현실성 있는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신규 관광산업 분류들을 KSIC과 연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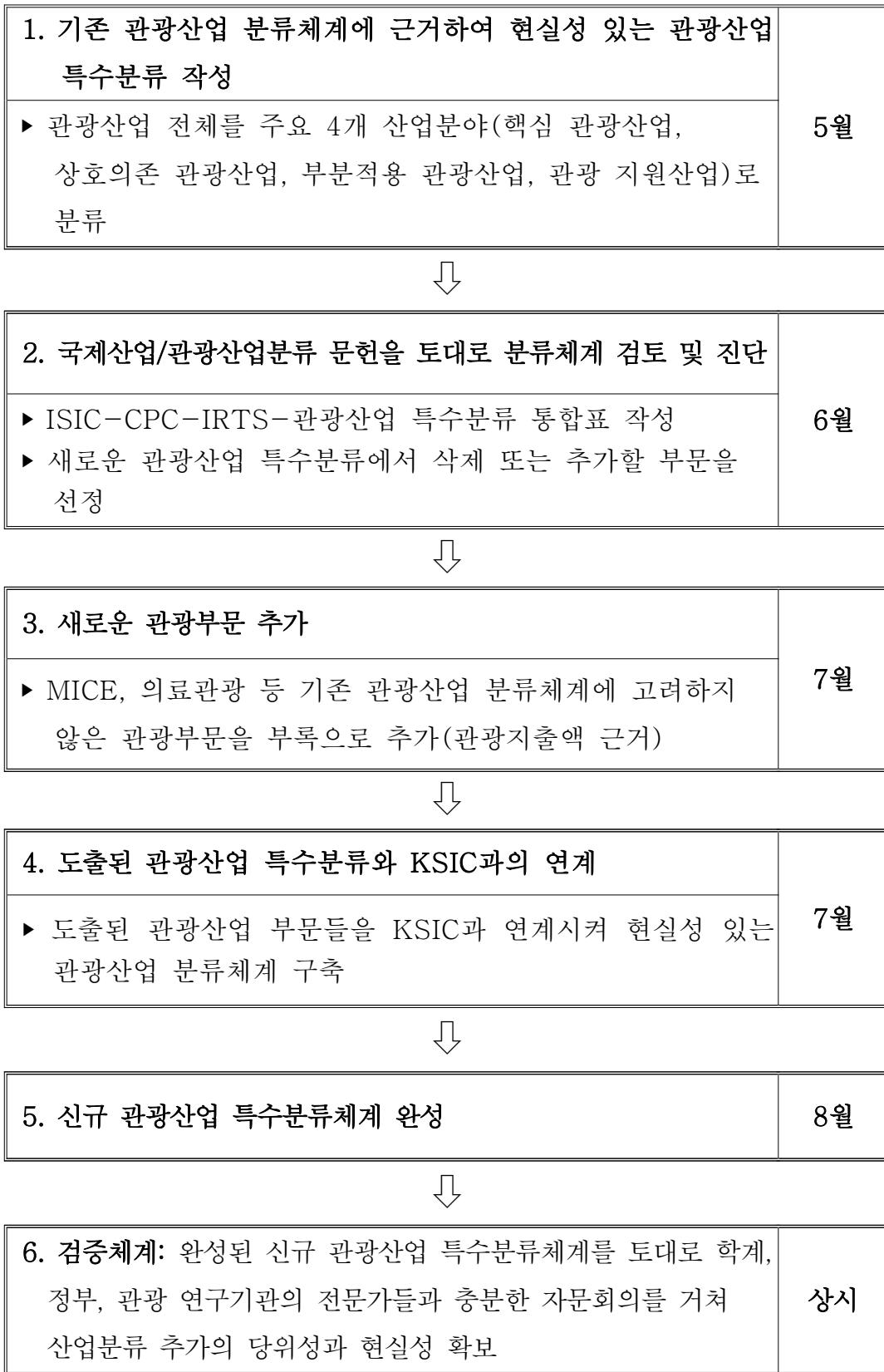
#### **라. 자문회의를 통한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당위성과 현실성 확보**

- 연구진이 작성한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학계, 정부, 관광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쳐 산업분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논리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도출함.
- 구체적인 자문기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관광공사가 포함되며, 학계는 본 연구를 수행함.

#### **마. MICE, 의료관광의 [부록] 처리**

- MICE, 의료관광 등 기존 관광산업 분류체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관광부문을 추가 하되,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처리하고자 함.
- MICE, 의료관광 등을 본 연구에서 부록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해당 산업들이 관광산업을 포함하면서도 많은 다른 산업들과 상호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MICE와 의료관광만의 산업분류체계를 본 연구에서 확정 짓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 따라서 광범위한 MICE와 의료관광만의 특수분류는 본 연구 이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MICE와 의료관광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하여 기초적인 분류체계 작업을 부록으로 처리하였음.

## 연구수행 체계도



## 6.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재구축의 주요내용

### 가. 국내·외 관광산업 정의 및 분류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설정

〈표 1-2〉 관광산업 4대 분류체계의 정의

포괄영역	정의
핵심 관광산업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 및 전시업,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 포함하며,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
상호의존 관광산업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금융 및 보험업, 레저장비업을 포함.
부분적용 관광산업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관광 지원산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 단체를 포함.

### 나. 분류구조는 1단계(관광산업 4대 분류체계), 2단계(3자리), 3단계(5자리), 4단계(7자리) 로 구성

〈표 1-3〉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코드(예시)

구분	관광산업 분류정의	분류코드 (예시)	분류명 (예시)
1단계 (대분류)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토대로 4개 산업분야(핵심,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로 관광산업을 재분류.	1	핵심 관광산업
2단계 (중분류)	1단계의 하위항목들을 KSIC의 코드분류 순서에 맞게 배열.	103	관광숙박업
3단계 (소분류)	2단계의 하위항목들을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체계의 순서 또는 해당 산업분류가 관광활동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배열.	10301	호텔업
4단계 (세분류)	3단계의 하위항목들을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체계의 순서 또는 해당 산업분류가 관광활동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배열.	1030101	일반 호텔업
		1030102	수상 호텔업
		1030103	한국전통 호텔업
		1030104	가족 호텔업



## 제 2 장 관광산업 특수분류 항목표



## 제 2 장 관광산업 특수분류 양목표

### 1 핵심 관광산업

#### 101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 10101 면세점
- 1010100 면세점
- 10102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sup>a</sup>
- 1010200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sup>a</sup>
- 10103 관광 인증 쇼핑업
- 1010300 관광 인증 쇼핑업

#### 102 관광 운수업

- 10201 관광 철도운송업
- 1020100 관광 철도운송업
- 10202 관광 도로운송업
- 1020201 시내순환 관광업<sup>a</sup>
- 1020202 전세버스 운송업
- 1020203 관광 케도업<sup>a</sup>
- 10203 관광 수상운송업
- 1020301 관광 유람선업<sup>a</sup>
- 1020302 크루즈업<sup>a</sup>
- 10204 관광 항공운송업
- 1020401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 1020402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

#### 103 관광 숙박업

- 10301 호텔업<sup>a</sup>
- 1030101 일반관광 호텔업<sup>a</sup>
- 1030102 수상관광 호텔업<sup>a</sup>
- 1030103 한국전통 호텔업<sup>a</sup>

a: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표기한 것임.

1030104	가족 호텔업 <sup>a</sup>
10302	휴양콘도미니엄업 <sup>a</sup>
1030200	휴양콘도미니엄업 <sup>a</sup>
10303	관광 펜션업 <sup>a</sup>
1030300	관광 펜션업 <sup>a</sup>
10304	일반 관광 숙박업
1030401	호스텔업 <sup>a</sup>
1030402	산림휴양림업
1030403	게스트하우스
1030404	레지던스 호텔
1030405	관광 인증 모텔업
1030406	민박업
1030407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sup>a</sup>
1030408	자동차 야영장업 <sup>a</sup>
1030409	한옥체험업 <sup>a</sup>
103049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104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10401	관광 음식점업
1040101	관광 식당업 <sup>a</sup>
10402	관광 주점업
1040201	관광 유홍음식점업 <sup>a</sup>
1040202	관광 극장유홍업 <sup>a</sup>
1040203	관광 공연장업(식사·주류 포함) <sup>a</sup>
1040204	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업 <sup>a</sup>

**105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10501	여행사업
1050101	일반 여행사업 <sup>a</sup>
1050102	국외 여행사업 <sup>a</sup>
1050103	국내 여행사업 <sup>a</sup>
10502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1050200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a: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표기한 것임.

**106 국제회의 및 전시업<sup>a</sup>**

- 10601 국제회의 및 전시 기획업<sup>a</sup>  
 1060100 국제회의 및 전시 기획업<sup>a</sup>  
 10602 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업<sup>a</sup>  
 1060200 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업<sup>a</sup>

**107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 10701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1070101 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1070102 사적지 관리 운영업  
 1070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1070201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1070202 자연공원 운영업  
 1070299 기타 관광지 운영업  
 10703 유원시설업<sup>a</sup>  
 1070301 종합유원시설업<sup>a</sup>  
 1070302 일반유원시설업<sup>a</sup>  
 1070399 기타유원시설업<sup>a</sup>  
 10704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1070400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10705 관광 공연장업<sup>a</sup>  
 1070501 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10706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70601 경주장 운영업  
 1070602 골프장 운영업  
 1070603 스키장 운영업  
 1070604 낚시장 운영업  
 1070605 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  
 10799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1079901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108 카지노업<sup>a</sup>**

- 10801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1080100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10802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1080200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a: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표기한 것임.

## 2 상호의존 관광산업

### 201 관광 건설업

- 20101 관광 건물종합건설업
- 2010101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 2010102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 20102 관광 토목 건설업
- 2010201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 2010202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 2010299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 202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 20201 레저용 의복 소매업
- 2020100 레저용 의복 소매업
- 20202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 2020200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 20203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2020300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20204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2020400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203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 20301 여행자 보험업
- 2030100 여행자 보험업
- 20302 금융서비스업
- 2030201 여행자 수표 발행
- 2030202 환전소

### 204 레저 장비업

- 204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2040100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20402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2040201	레저 장비 임대업
2040202	운송장비 임대업
20403	자동차 임대업
2040301	캠핑카 임대업
2040302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2040303	일반 자동차 임대업

### 3 부분적용 관광산업

301 관광 비인증 쇼핑업

- 30100 관광 비인증 쇼핑업  
3010000 관광 비인증 쇼핑업

302

부분관광 운송업

- |         |               |
|---------|---------------|
| 30201   |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
| 3020101 | 도시간 철도 운송업    |
| 3020102 | 도시내 철도 운송업    |
| 3020103 |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
| 3020104 | 시내외버스 운송업     |
| 3020105 | 택시 운송업        |
| 30202   |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
| 3020201 | 수상운송업         |
| 3020202 |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

303

부분관광 숙박업

- |         |            |
|---------|------------|
| 30301   | 청소년수련원     |
| 3030100 | 청소년수련원     |
| 30302   | 관광 비인증 모텔업 |
| 3030200 | 관광 비인증 모텔업 |

- |         |              |
|---------|--------------|
| 30401   | 부분관광 음식점업    |
| 3040199 | 기타 관광 일반음식점업 |
| 30402   | 부분관광 주점업     |
| 3040201 |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
| 3040299 | 기타 관광 주점업    |

305 부분관광 공연장업

- 30501 일반 공연장업

3050101      공연시설 운영업

**306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 30601      관광 정보 서비스업
- 3060101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 3060102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 30602      전문기술 서비스업
- 3060201      관광 사진업
- 3060202      통역 서비스업
- 30699      기타 관광 서비스업
- 3069901      온천탕
- 3069999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4****관광 지원산업****401 관광 연구 개발업**

- 40100 관광 연구 개발업  
4010000 관광 연구 개발업

**402 관광 공공기관**

- 40201 문화 및 관광행정  
4020100 문화 및 관광행정  
40202 관세행정  
4020200 관세행정  
40203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4020300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40204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4020400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403 관광 교육서비스업**

- 40301 교육기관  
4030101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4030102 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  
40399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039901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4039902 기타 관광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04 관광단체**

- 40401 회원단체  
4040101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4040102 여행클럽  
40402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4040200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 제 3 장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 제 3 장 / 분류양목명 및 내용 설명

### 1. 4개 산업분류 소개

#### 가. 핵심 관광산업

-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 및 전시업,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 포함하며,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

#### 나. 상호의존 관광산업

-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금융 및 보험업, 레저장비업을 포함.

#### 다. 부분적용 관광산업

-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 라. 관광 지원산업

-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

## 2. 분류관련 용어 애설

### □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2012)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 □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2012)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 □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2012)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함.

### □ 관광 인증 쇼핑업의 예

#### ■ 1st(퍼스트) 인증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제도로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쇼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우수한 매장 환경과 상품 및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쇼핑업체를 발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인증대상 필수기준은 아래와 같음.

- ①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
- ② 영업과 적합한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소
- ③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업소
- ④ 주 6일 이상 정상영업을 하며, 개점시간과 폐점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업소
- ⑤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업소

### □ 관광 인증 모텔업의 예

#### ■ 굿스테이

굿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고유 브랜드로, 관광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①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②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③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④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⑤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⑥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 ⑦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 인증된 식당업의 예

### ■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객 음식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전국 153개 식당을 ‘외래관광객 전문식당’으로 지정 및 식당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함.

- ① 사업장의 규모
- ② 종사자 현황
- ③ 홀 근무자 서비스제공 가능 언어
- ④ 고객현황(내/외국인 매출액 및 고객 수를 각각 집계)
- ⑤ 영업시간
- ⑥ 주차시설 유무
- ⑦ 메뉴현황
- ⑧ 영업장 주변의 대표 관광지 현황(반경 10km 이내)

KSIC분류

**1****핵심 관광산업****101****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47\*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10101

**면세점**

47121\*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의 편의 도모

47119\*

를 위해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 상점

47190\*

1010100

**면세점**

47121\*

47119\*

47190\*

10102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47842\*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일 것

※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제 외>

면세점

1010200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47842\*

10103

**관광 인증 쇼핑업**

471\*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종합 소매업

<예 시>

1st(퍼스트) 인증 상점

<제 외>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 해당 KSIC코드 중에서 일부 품목에만 해당할 경우를 의미함.

1010300	<b>관광 인증 쇼핑업</b>	471*
<b>102</b>	<b>관광 운수업</b>	49*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50*
		51*
10201	<b>관광 철도운송업</b>	4910*
1020100	<b>관광 철도운송업</b>	49100*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 시>	
	관광열차, 테마열차	
10202	<b>관광 도로운송업</b>	4921*
1020201	<b>시내순환 관광업</b>	49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예 시>	
	시티투어	
1020202	<b>전세버스 운송업</b>	49232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 시>	
	관광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 노선버스 운영	
1020203	<b>관광궤도업</b>	49239*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예 시>	
	케이블카 운송, 동물견인차량 운영(마차 운송업 등)	

10203	<b>관광 수상운송업</b>	50*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1020301	<b>관광 유람선업</b>	50121* 50201*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li> <li>※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li> <li>※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ul>	
	<p>&lt;예 시&gt;</p> <p>유람선 운영(내륙수상)</p>	
	<p>&lt;제 외&gt;</p> <p>화물운송</p>	
1020302	<b>크루즈업</b>	50111*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 할 것</li> <li>※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li> <li>※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ul>	
	<p>&lt;예 시&gt;</p> <p>외항여객 정기 운송, 외항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항로), 외항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린)</p>	
	<p>&lt;제 외&gt;</p> <p>화물운송</p>	

10204	<b>관광 항공운송업</b>	51*
항공기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1020401	<b>관광 항공 정기운송업</b>	51100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b>&lt;예 시&gt;</b>		
항공여객 운송(정기)		
<b>&lt;제 외&gt;</b>		
항공화물 운송(정기)		
1020402	<b>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b>	51200*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 포함)		
<b>&lt;예 시&gt;</b>		
항공여객 운송(부정기), 경비행기,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b>&lt;제 외&gt;</b>		
항공화물 운송(부정기)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업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 사용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103	<b>관광 숙박업</b>	5511*
관광객의 숙박 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또는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b>&lt;제 외&gt;</b>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6811)		
10301	<b>호텔업</b>	55111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1030101 **일반관광 호텔업** 55111\*

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예시>

관광호텔

1030102 **수상관광 호텔업** 55111\*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방문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예시>

수상관광호텔

1030103 **한국전통 호텔업** 55111\*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예시>

한국전통호텔

1030104	<b>가족 호텔업</b>	55111*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li> <li>※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li> <li>※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li> <li>※ 외국인에게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li> <li>※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li> </ul>		
<p>&lt;예 시&gt;</p> <p>가족호텔</p>		
10302	<b>휴양콘도미니엄업</b>	55113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 자, 그 밖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설을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 식·운동·오락·휴양·공연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 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li> <li>※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li> <li>※ 매장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li> <li>※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li> </ul>		
<p>&lt;예 시&gt;</p> <p>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콘도와 결합된 골프 장 운영</p>		
1030200	<b>휴양콘도미니엄업</b>	55113

10303 관광 펜션업 55119\*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예시>

숙박용 펜션 운영, 휴양펜션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조례에 의한 별도의 숙박업종)

1030300 관광 펜션업 55119\*

10304 일반 관광 숙박업 55112\*  
55119\*

1030401 호스텔업 55119\*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예시>

유스호스텔

<제외>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1030402	<b>산림휴양림업</b>	55119*
전국에서 수림이 빼어난 곳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이 조성한 국민휴식공간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b>&lt;예 시&gt;</b>		
숲속의 집, 휴양관, 연립동		
<b>&lt;제 외&gt;</b>		
오토캠프장		
1030303	<b>게스트하우스</b>	55112*
외국인 여행자에게 침실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 부엌, 샤워룸,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b>&lt;예 시&gt;</b>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전용 숙박		
1030404	<b>레지던스 호텔</b>	55119*
호텔급 서비스에 다양한 편의시설, 취사시설, 주거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말함. 한두 달 정도 머물 외국인, 외지 직장인,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며 숙박료는 호텔보다 저렴해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2012년 1월 10일 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로 세분화함.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업(생활)으로 영업이 허가됨		
1030405	<b>관광 인증 모텔업</b>	55112*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		
<b>&lt;예 시&gt;</b>		
굿스테이 모텔		

1030406	<b>민박업</b>	55119*
	일반 가정집에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예 시>		
민박시설 운영		
1030407	<b>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b>	55119*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0m<sup>2</sup>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정 가능</li> <li>※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li> <li>※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 됨</li> </ul>		
<제 외>		
한옥체험업		
1030408	<b>자동차 야영장업</b>	55119*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방문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li> <li>※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 <li>※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li> </ul>		
1030409	<b>한옥체험업</b>	55119*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예 시>		
북촌한옥마을		

1030499	<b>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b>	55119*
	분류되지 않는 기타 관광 숙박시설로 단기간(1달 이내)의 숙박시설을 운영함	
	<예 시>	
	온천랜드, 관광농원, 농장, 템플스테이, 처치스테이	
<b>104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b>		56*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b>10401 관광 음식점업</b>		561*
1040101	<b>관광 식당업</b>	5611*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음식점업	
	<예 시>	
	외래관광객 전문식당(한국관광공사 지정)	
	<제 외>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b>10402 관광 주점업</b>		562*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b>1040201 관광 유흥음식점업</b>		56211*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활동	
	<예 시>	
	한국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비어홀(접객서비스 딸린)	

1040202	<b>관광 극장유홍업</b>	56212*
무도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활동		
<b>&lt;예 시&gt;</b>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무도 유홍 주점		
<b>&lt;제 외&gt;</b>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1291)		
1040203	<b>관광 공연장업(식사 · 주류 포함)</b>	5621*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b>&lt;예 시&gt;</b>		
실내관광공연장(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 방음시설 갖추어야 함), 실외관광공연장(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		
1040204	<b>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업</b>	5621*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홍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b>&lt;예 시&gt;</b>		
서양식 접객주점		
105	<b>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b>	752*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10501	<b>여행사업</b>	7521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1050101	<b>일반 여행사업</b>	75211*
국내 · 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일 것		
<b>&lt;예 시&gt;</b>		
일반여행사, 국내 · 외 여행사		
<b>&lt;제 외&gt;</b>		
국내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050102	<b>국외 여행사업</b>	75211*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천만원 이상일 것		
<b>&lt;예 시&gt;</b>		
국외 여행사		
1050103	<b>국내 여행사업</b>	75212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b>&lt;예 시&gt;</b>		
국내 여행사		

10502	<b>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b>	75290*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lt;예 시&gt;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숙식 알선, 여행자 안내 서비스, 숙박예약 대리

&lt;제 외&gt;

매표대리

1050200	<b>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b>	75290*
---------	-----------------------	--------

106	<b>국제회의 및 전시업</b>	75992*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10601	<b>국제회의 및 전시 기획업</b>	75992*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lt;예 시&gt;

국제회의 기획 서비스, 전시회 기획 서비스

1060100	<b>국제회의 및 전시 기획업</b>	75992*
---------	----------------------	--------

10602	<b>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업</b>	75992*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lt;예 시&gt;

1060200	국제회의 진행 서비스 전시대행, 박람회대행 서비스 <b>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업</b>	75992*
<b>107</b>	<b>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b>	90*
10701	<b>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b>	9022
1070101	<b>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b> 일반대중에게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90221
	〈예 시〉 역사 박물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과학관, 천문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47841)	
1070102	<b>사적지 관리 운영업</b>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	90222
10702	<b>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b>	9023
1070201	<b>식물원, 동물원 운영업</b>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됨	90231
	〈예 시〉 식물원, 동물원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47852)	
1070202	<b>자연공원 운영업</b>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	90232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1070299	<b>기타 관광지 운영업</b>	902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	
	<예 시>	
	천연동굴 관리 운영	
10703	<b>유원시설업</b>	9121*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 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1070301	<b>종합유원시설업</b>	91210*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워터파크 운영	
1070302	<b>일반유원시설업</b>	91210*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소규모 유원지	
1070399	<b>기타유원시설업</b>	91229*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 는 업	
	<예 시>	
	유령의집,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목마 임대	
10704	<b>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b>	55114* 90232*
	<b>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b>	55114*
1070400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 학습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90232*

10705	<b>관광 공연장업</b>	9011*
1070501	<b>관광 공연시설 운영업</b>	90110*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는 업	
<b>&lt;예 시&gt;</b>		
극장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10706	<b>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b>	91*
1070601	<b>경주장 운영업</b>	91113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b>&lt;예 시&gt;</b>		
자동차 경주장(F1), 투우장(소싸움),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b>&lt;제 외&gt;</b>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91249)		
1070602	<b>골프장 운영업</b>	91121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음	
<b>&lt;예 시&gt;</b>		
골프장, 골프강습		
<b>&lt;제 외&gt;</b>		
골프연습장(91136)		

1070603	<b>스키장 운영업</b>	91122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음		
<b>&lt;예 시&gt;</b>		
스키장, 스키강습, 스키 장비임대		
<b>&lt;제 외&gt;</b>		
눈썰매장(91139),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		
1070604	<b>낚시장 운영업</b>	91231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실외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b>&lt;예 시&gt;</b>		
유료 낚시터 운영		
<b>&lt;제 외&gt;</b>		
실내 낚시장 운영		
1070605	<b>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b>	91139*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보트대여)		
<b>&lt;예 시&gt;</b>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 해수욕장 운영 수렵장 운영, 요트장		
10799	<b>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b>	91299
1079901	<b>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b>	91299*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b>&lt;예 시&gt;</b>		
전망탑 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 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b>&lt;제 외&gt;</b>		
케이블카 운행		

<b>108</b>	<b>카지노업</b>	91249*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10801	<b>외국인 전용 카지노업</b>	91249*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1080100	<b>외국인 전용 카지노업</b>	91249*
10802	<b>내국인 출입 카지노업</b>	91249*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예 시〉	
	강원랜드 카지노	
1080200	<b>내국인 출입 카지노업</b>	91249*

## 2 상호의존 관광산업

201	<b>관광 건설업</b>	41*
20101	<b>관광 건물종합건설업</b>	411*
2010101	<b>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b> 관광 관련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41121*
	〈예 시〉 상업 건물 건설업: 상가 · 백화점 · 쇼핑센터 등 관광객이 찾는 시설 건설업 휴양 건물 건설업: 호텔 · 숙박시설(별장, 콘도, 산장) 건설업	
2010102	<b>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b>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41129*
	〈예 시〉 주차시설, 터미널	
20102	<b>관광 토목건설업</b>	412*
2010201	<b>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b> 관광 택지 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	41210*
2010202	<b>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b>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됨	41226*
2010299	<b>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b> 용지를 제외한 스타디움 또는 경기장 같은 레저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41229*

〈예 시〉  
공연 · 집회장소 건설업, 경기장 · 운동장 건설업

<b>202</b>	<b>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b>	47*
20201	<b>레저용 의복 소매업</b> 남녀용 운동복, 수영복, 골프의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47416*
	<예 시> 골프의류, 등산복, 수영복, 스키복	
2020100	<b>레저용 의복 소매업</b>	47416*
20202	<b>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b> 레저 및 스포츠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47631* 47640*
	<예 시> 등산장비(텐트 포함) 소매, 골프장비 소매, 스키다이빙 및 스쿠버장비, 스키장비, 캠핑 및 하이킹장비, 수렵 및 낚시용 장비 소매	
2020200	<b>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b>	47631* 47640*
20203	<b>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b>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	47632
	<예 시> 자전거 유통 및 소매, 개인용 운송장비 유통 및 소매(비동력식)	
2020300	<b>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b>	47632
20204	<b>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b> 관광을 목적으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47430*
	<예 시> 여행용 액세서리 소매, 여행용 가방 소매, 트렁크 소매	
2020400	<b>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b>	47430*

<b>203</b>	<b>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b>	65*
		66*
20301	<b>여행자 보험업</b>	651*
2030100	<b>여행자 보험업</b>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65121*
	<예 시>	
	여행자 보험	
20302	<b>금융서비스업</b>	66199*
2030201	<b>여행자 수표 발행</b> 은행을 위해 수표의 현금화, 여행자 수표의 발행 등과 같이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6199*
	<예 시>	
	여행자 수표 발행	
2030202	<b>환전소</b> 은행을 위해 외환교환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6199*
	<예 시>	
	환전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b>204</b>	<b>레저장비업</b>	4782*
		69*
20401	<b>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b>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47823
	<예 시>	
	카메라 소매, 디지털카메라 소매, 소진필름 소매, 사진장비 소매	
2040100	<b>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b>	47823

20402	<b>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b>	691*
		692*
2040201	<b>레저장비 임대업</b>	69210*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예 시>	
	스키(장비)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카누 임대	
	<제 외>	
	자동차 임대업	
2040202	<b>운송장비 임대업</b>	69190*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예 시>	
	상업용 보트, 모터사이클, 경비행기, 오락용 선박임대, 유람선대여(운전자 없이)	
	<제 외>	
	캠핑카, 내륙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20403	<b>자동차 임대업</b>	6911*
2040301	<b>캠핑카 임대업</b>	69110*
	운전자 없이 캠핑카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2040302	<b>관광용 자동차 임대업</b>	69110*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예 시>	
	관광용 승용차(렌트카) 임대, 리무진 임대	
2040303	<b>일반 자동차 임대업</b>	69110*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제 외>	
	캠핑카 임대업,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3****부분적용 관광산업**

<b>301</b>	<b>관광 비인증 쇼핑업</b>	47*
------------	-------------------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외국인 관광객 주요 쇼핑 품목: 향수/화장품, 식료품, 의류, 인삼/한약재, 김치, 신발류, 보석/액세서리, 피혁 제품 등

<제 외>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인증된 관광 쇼핑업

30100	<b>관광 비인증 쇼핑업</b>	47*
-------	-------------------	-----

3010000	<b>관광 비인증 쇼핑업</b>	47*
---------	-------------------	-----

<b>302</b>	<b>부분관광 운송업</b>	49*
		50*

30201	<b>부분관광 육상운송업</b>	49*
-------	-------------------	-----

3020101	<b>도시간 철도 운송업</b>	49100*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 시>

여객철도운송(도시간), 일반여객운송(철도)

<제 외>

관광열차, 테마열차

3020102	<b>도시내 철도 운송업</b>	49211*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3020103	<b>관광보조 버스 운송업</b>	49219*
	도시 및 균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광 여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기타 산업활동	
	<예 시>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 리무진버스, 셔틀버스	
3020104	<b>시내외버스 운송업</b>	49212
	도시 및 군의 일정행정 구간 안, 또는 도시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49220
	<예 시>	
	고속버스, 시내노선	
3020105	<b>택시 운송업</b>	49231*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운전자 떨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됨	
	<예 시>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떨린), 개인택시 운송	
30202	<b>부분관광 수상운송업</b>	50*
3020201	<b>수상운송업</b>	50203*
	낚시선박 임대, 잠수선 임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운송업	
	<예 시>	
	낚시선박임대, 잠수선 운영, 범선운영	
3020202	<b>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b>	50121*
	강, 호수, 항만 내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50201*
	<예 시>	
	내륙여객선 임대(승무원 떨린), 내륙수상택시, 여객운송	
	<제 외>	
	외항여객운송, 외항여객선박 임대, 유람선 운영(내륙수상)	

<b>303</b>	<b>부분관광 숙박업</b>	551*
30301	<b>청소년수련원</b>	55114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 시>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제 외>		
유스호스텔(55119)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수련시설(91229) 교육위주의 수련시설(856)		
3030100	<b>청소년수련원</b>	55114
30302	<b>관광 비인증 모텔업</b>	55112*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제 외>		
관광 인증 모텔업		
3030200	<b>관광 비인증 모텔업</b>	55112*
<b>304</b>	<b>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b>	561* 562*
30401	<b>부분관광 음식점업</b>	561*
3040199	<b>기타 관광 일반음식점업</b>	5611*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제 외>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음식점업		

30402	<b>부분관광 주점업</b>	562*
3040201	<b>비알콜 관광 음료점업</b>	56220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		
<예 시>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내의 커피전문점, 제과점		
3040299	<b>기타 관광 주점업</b>	562*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제 외>		
관광 공연장업, 관광 유홍음식점업, 관광 극장유홍업, 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업		
<b>305</b>	<b>부분관광 공연장업</b>	9011*
30501	<b>일반 공연장업</b>	9011*
3050101	<b>공연시설 운영업</b>	90110*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621) 영화상영관(5914)		
<b>306</b>	<b>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b>	58* 63* 73* 96*
30601	<b>관광 정보 서비스업</b>	581* 639*

3060101	<b>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b>	63991*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CD/DVD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여행 정보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됨.	
3060102	<b>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b>	58119*
	학습서적, 만화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팝플렛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예 시>	
	지도, 가이드북	
30602	<b>전문기술 서비스업</b>	73*
3060201	<b>관광 사진업</b>	73301*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거나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	
	<예 시>	
	여권 사진촬영, 행사 비디오촬영, 관광 사진제작(가두사진업)	
	<제 외>	
	상업용 사진 촬영(광고관련 등)	
3060202	<b>통역 서비스업</b>	73902*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시>	
	통역 서비스	
30699	<b>기타 관광 서비스업</b>	96*

3069901      온천탕      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 시>

온천탕, 온천사우나 운영, 찜질방(황토방포함)

3069999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96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광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

## <예 시>

도어맨, 독립적인 포터, 발렛 주차서비스

**4 관광 지원산업** 70\* 84\*  
 85\* 94\*  
 99\*

**401 관광 연구 개발업** 70209\*  
 관광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 시>

관광현상 연구 연구소 또는 연구원

40100 관광 연구 개발업 70209\*  
 4010000 관광 연구 개발업 70209\*

**402 관광 공공기관** 84\*

40201 문화 및 관광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관리 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 84229\*

<예 시>

문화 및 오락시설 관리, 관광시설의 허가, 규제, 검사, 여행자 안내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4020100 문화 및 관광행정 84212\*  
 84229\*

40202 관세행정 84114\*  
 금융, 재정, 과세 및 경제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기관

<예 시>

면세, 관세청 등 관광여객들의 관세업무 관련

4020200 관세행정 84114\*

40203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84310\*  
 외교정책과 대외통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기관

<예 시>

비자발급, 관광 관련 영사업무

4020300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84310*
40204	<b>특수경찰 및 공항경비</b>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각급 기관	84404*
	<예 시> 국가 보안 담당	
4020400	<b>특수경찰 및 공항경비</b>	84404*
<b>403</b>	<b>관광 교육서비스업</b>	85*
40301	<b>교육기관</b>	853*
4030101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받은 관광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기관	85301* 85302* 85303*
	<예 시> 호텔조리학과, 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스튜어디스 전문교육학과	
4030102	<b>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b> 인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고등학교	85212*
	<예 시> 관광고등학교, 조리과학고등학교	
40399	<b>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b>	856*
4039901	<b>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b> 스포츠 교육기관	85611*
	<예 시>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4039902	<b>기타 관광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b>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	85612*
<예 시>		
	바둑 교실	
<b>404</b>	<b>관광 단체</b>	94* 99*
40401	<b>회원단체</b>	9412* 9499*
4040101	<b>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b>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회원간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94110* 94120*
<예 시>		
	관광사협동조합, 관광관련 학회, 관광관련 협회	
4040102	<b>여행클럽</b>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	94990*
<예 시>		
	여행클럽, 관광지원봉사단체, 여행동호회, 레저활동 동호회	
40402	<b>관광관련 국내·외 기관</b> 관광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국내 및 외국 기관	99001 99009
<예 시>		
	주한외국대사관, 주한외국관광청	
4040200	<b>관광관련 국내·외 기관</b>	99001 99009





#### 제 4 장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활용방안



## 제 4 장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활용방안<sup>1)</sup>

### 1.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컨설팅의 의의

- 기존의 관광산업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부의 정책이나 학계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관광통계자료가 산출되어 왔음.
-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포함된 관광사업체만을 관광산업 대상으로 하여 기초통계를 산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정책적 활용이 아닌 전체 관광산업의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광의 산업적 범위가 축소되어 통계상 왜곡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이에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정부정책이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관광산업을 명확히 분류하여 타당성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에 축소 조사되고 있던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음.

### 2.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조사 활용방안

#### 가. 시계열자료 단절현상에 대비한 조사방안 구축

- 관광진흥법에 포함된 관광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던 기존방식에서 새로운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방식을 이용할 경우,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자료 단절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 특수분류체계에서 제시한 4개의 산업별 영역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상 포함된 사업체들의 데이터를 별도로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특수분류체계를 통한 관광산업의 범위 확대와 더불어 시계열자료 단절현상을 막을 수 있음.

1) 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연구원, 문화관광정보센터 박근화부장, 전진영책임연구원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예산 고려

-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예산검토가 필요함.
- 예산축소로 인해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전년 대비 표본이 300개 줄어든 상황임(2010년 3,300개 → 2011년 3,000개).
- 따라서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조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다.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방법론 검토

- 현재 조사는 관광진흥법상 7개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추출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조사가 끝난 설문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가 적용될 경우 핵심산업 이외의 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비<sup>2)</sup> (Tourism Ratio)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라. 모집단 확보 및 표본설계 검토

- 조사표본수( $n=3,000$ )는 변동계수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는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수분류체계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이에 맞는 정확하고 타당한 표본설계 구축이 필요함.

## 3. 관광산업 표본틀 구축 방안

-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연계표를 작성한 후 전국 사업체조사의 자료에 관광산업 특수분류(안) 코드를 부여하여 표본틀을 구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광산업 특수분류(안)가 1:1 매칭이 아닌 여러 개의 산업코

2) 매출액 중 관광객에 의해 기여한 비율.

드가 맞물릴 경우,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사업체들의 품목을 분석한 후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어도 품목에 따라 나누어져 특수분류(안) 코드를 부여하도록 해야 함.

- 품목을 분석한 후에도 특수분류(안)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개의 표본틀이 아닌 여러 개의 표본틀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협회자료나 연구자료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 특수분류(안)에 맞는 코드를 부여한 사업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관광산업 DB를 구축함으로써 표본틀을 마련하고 향후 조사나 연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 4.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예의 활용 방안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관광산업 특수분류(안)에 적용하여 개편할 경우 조사대상과 조사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관련 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함.
  - 관광산업의 핵심 산업부문은 관광진흥법상에 포함된 사업체들을 별도 구분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조사통계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해야 함.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핵심 관광산업과 부분적용 관광산업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부분적용 관광산업의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체가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비율(관광비)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함.
  - 개선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 5. 기타 활용방안을 위한 검토사항

- 「관광산업 기여도(관광비) 조사」와 같은 조사에서 핵심 관광산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의 기여도 산출시 관광기여율 산출방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관광산업 특수분류(안)를 활용하여 통계 조사 시 기여율에 따른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관광산업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특수분류(안)가 개선될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조사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개선사항을 조사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해야 함.



## [부록 1] 국내·외 분류 참고문언

### 1. IRTS(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 국문명칭: 관광통계 국제 권고안
- 담당기관: UNWTO(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 UNSD(국제연합통계위원회)
- 특징: 방문객이 하는 활동과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표와 대조하여 이를 활동을 측정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권고는 국가들이 관광통계의 편집에 사용하기 위한 공통적인 참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UN, UN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로 상이한 관광통계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관광과 관련된 ISIC와 CPC를 매치시켜 제시함.

### 2.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국문명칭: 국제표준산업분류
- 담당기관: UN(국제연합)
- 특징: 모든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국제적인 산업 기준을 제시함.

### 3.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 국문명칭: 중앙생산물분류
- 담당기관: UNSD(국제연합통계위원회)
- 특징: 산업 생산, 국가 회계, 무역, 가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할 때의 국제적인 기준. 신규 관광산업 분류체계의 예시 및 제외항목에 참조.

### 4. 관광진용법

- 시행: [2011.12.16] [법률 제 10801호, 2011. 6.15]
- 특징: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핵심 관광부분을 분류하는데 참조함.
-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함.
-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함.

## 5. 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국문명칭: 한국표준산업분류
- 담당기관: 통계청
- 특징: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기초하여 제정됨.

## 6. 관광산업특수분류

- 담당기관: 통계청
- 특징: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관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됨.

## 7.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 담당기관: 한국은행
- 특징: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동안(보통 1년 간) 일정지역내에서 발생한 생산 및 처분에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국민경제의 해부도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1960년부터 5년마다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측표 발표 중간에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정한 연장표를 발간함. 실측표를 작성할 때는 4,000여개 업체, 연장표를 작성할 때는 350여개 업체를 직접 조사함(네이버 지식 사전, 2012).

## [부록 2] MICE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관광산업

- 2009년 정부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MICE 관광산업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MICE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MICE 관광산업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동 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및 산업구조가 파악되어야 함.
- MICE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MICE 관광산업을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고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시 말해서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면서도 국내상황에 맞는 MICE 관광산업만의 새로운 산업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MICE 관광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포함하면서도 많은 다른 산업들과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MICE 관광산업의 특성 때문에 MICE 관광산업만의 새로운 산업분류체계를 본 연구에서 확정짓는 데에는 시간적,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MICE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ICE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MICE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MICE 관광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MICE 관광산업 주체들(컨벤션 참가자, 전시 참관자, 컨벤션 주최자, 전시 주최자, 전시 참가업체)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연계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관련 KSIC 코드와 연계시키는 통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MICE 관광산업이 핵심이 되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중심으로 MICE 관광산업 주체의 지출액 - 산업연관표 산업분류 - KSIC 코드를 연계하는 통합표를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대한 세부적 통합표는 아래와 같음.

## 〈부록 표 1〉 컨벤션 산업

지출액 내용	해당 I-O섹터(중분류)	해당 I-O섹터(소분류)	KSIC (5자리)	항목명	컨벤션 참가자	컨벤션 주최자
숙박비	131 숙박	326 숙박	55111	호텔업	o	o
장치공사비	046 목재	114 제재목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o
		115 합판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o
		116 재생 및 강화목재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o
	097 기타 전기장치	24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o
		244 전선및케이블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o
		245 전지	28201	일차전지		o
			28202	축전지		o
		246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o
		247 기타전기장치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o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o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o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o
			42499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o
인쇄 출판비	051 인쇄 및 복제	129 인쇄	18121	제판 및 조판업		o
		130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o
	160 출판서비스	384 신문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o
		385 출판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o
시청각기자재비	101 영상 및 음향기기	256 TV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o
		257 음향기기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o
		258 기타영상음향기기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o
	102 통신 및 방송기기	259 유선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o
		260 무선통신단말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o

		261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o
주문제작비	129 도소매	322 소매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o	o
연회행사비	130 음식점	325 기타음식점	56120	기관구내식당업	o	o
식음료비	130 음식점	323 일반음식점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o	o
유홍비	130 음식점	324 주점	5621	주점업	o	o
교통비	132 철도운송	327 철도여객운송	49100	철도운송업	o	o
	133 도로운송	329 도로여객운송	4921	도로 여객 운송업	o	o
		332 연안및내륙수상운송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o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o	
	136 항공운송	334 항공운송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o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o	
수송비	132 철도운송	328 철도화물운송	49100	철도운송업		o
	133 도로운송	330 도로화물운송	49401	택배업		o
		330 도로화물운송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o	
			49390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o
운송보관비	137 운수보조서비스	33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52920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o	
		337 항공운수보조서비스	5293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o	
사무국운영비	141 우편 및 전화	341 우편	61100	우편업		o
	142 부가통신/정보서비스	343 초고속망서비스	61210	유선통신업		o
			61220	무선통신업		o
		344 부가통신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o
	050 종이제품	345 정보서비스	63111	자료 처리업		o
		126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o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o
	104 사무용기기	263 사무용기기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o

	1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2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310	컴퓨터 제조업		o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o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o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o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
	166 사무용품	367 컴퓨터관련서비스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o
		401 사무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o	o
지급수수료	145 보험	351 생명보험	65110	생명 보험업	o	o
		352 비생명보험	65121	손해 보증업		o
	146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353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65122	보증 보험업		o
회의전시장 임차비	147 부동산	355 부동산임대 및 공급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o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o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o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o
부대시설사용료	147 부동산	356 부동산관련서비스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o
PCO/PEO기획비	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6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o
광고홍보비	151 광고	363 광고	71310	광고 대행업		o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o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o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o
문화서비스비	161 문화서비스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90190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o	o
		387 문화서비스(기타)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o	o
		389 영화상영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o	o
		390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90191	공연 기획업	o	o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o
오락서비스비	162 오락서비스	391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o	o

		392 기타오락서비스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o	o
부스임대비	154 기타사업서비스	368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369 청소 및 소독서비스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o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o
인력운영비, 연사초청비	154 기타사업서비스	370 인력공급 및 알선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o
		371 기타 사업서비스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o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o
등록비, 입장료	163 사회단체	393 산업 및 전문단체	94100	산업 및 전문가 단체		o
	163 사회단체	394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o
기타비용	164 수리서비스	395 자동차수리서비스	59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o	o
		396 기타개인수리서비스	95390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o	o
	165 개인서비스	397 세탁	96911	산업용 세탁업	o	o
		398 이용 및 미용	96110	이용 및 미용업		o
		399 가사서비스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o
	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61법무 및 회계서비스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o
	154 기타사업서비스	371 기타 사업서비스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o
	156 교육서비스	376 교육기관(산업)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o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 된 교육기관		o
	154 기타사업서비스	371 기타 사업서비스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o

주1) 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2009); 한국은행(2010); Lee, Lee, & Yoon(2012)를 참조해서 작성함.

주2) O: MICE 주체별로 지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시함.

**<부록 표 2> 전시산업**

지출액 내용	해당 I-O섹터(중분류)	해당 I-O섹터(소분류)	KSIC (5자리)	항목명	전시 참관자	전시 주최자	전시 참가업체
숙박비	131 숙박	326 숙박	55111	호텔업	o	o	o
장치공사비	046 목재	114 제재목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o	o
		115 합판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o	o
		116 재생 및 강화목재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o	o
	097 기타 전기장치	24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o	o
		244 전선및케이블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o	o
		245 전지	28201	일차전지		o	o
			28202	축전지		o	o
		246 전구램프및조명장치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o	o
		247 기타전기장치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o	o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o	o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o	o
	124 비주택건축	306 비주택건축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o	o
			42499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o	o
인쇄출판비	051 인쇄 및 복제	129 인쇄	18121	제판 및 조판업		o	o
		130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o	o
	160 출판서비스	384 신문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o	o
		385 출판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o	o
시청각기자재비	101 영상 및 음향기기	256 TV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o	o
		257 음향기기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o	o
		258 기타영상음향기기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o	o
	102 통신 및 방송기기	259 유선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o	o
		260 무선통신단말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o	o
주문제작비	129 도소매	322 소매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o	o	o
연회행사비	130 음식점	325 기타음식점	56120	기관구내식당업	o	o	o

식음료비	130 음식점	323 일반음식점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o	o	o
유통비	130 음식점	324 주점	5621	주점업	o	o	o
교통비	132 철도운송	327 철도여객운송	49100	철도운송업	o	o	o
	133 도로운송	329 도로여객운송	4921	도로 여객 운송업	o	o	o
		332 연안및내륙수상운송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o		o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o		o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o
	136 항공운송	334 항공운송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o		o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o		o
수송비	132 철도운송	328 철도화물운송	49100	철도운송업		o	o
	133 도로운송	330 도로화물운송	49401	택배업		o	o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o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o	o	
			49390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o	o
	135 수상운송	333 외항운송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o
		33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o
			5020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o
운송보관비	137 운수보조서비스	335 육상운수보조서비스	52101	일반 창고업			o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o
		33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52920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o		o
		337 항공운수보조서비스	5293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o		o
	138 하역	338 하역	52940	화물 취급업			o
	139 보관 및 창고	339 보관 및 창고	52100	보관 및 창고업			o
	140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340 기타운수관련서비스	52990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o
사무국운영비	141 우편 및 전화	341 우편	61100	우편업		o	
	142 부가통신/정보서비스	343 초고속망서비스	61210	유선통신업		o	
			61220	무선통신업		o	o
		344 부가통신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o	
		345 정보서비스	63111	자료 처리업		o	

	050 종이제품	126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o		o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o		o
	104 사무용기기	263 사무용기기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o		o
	1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2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310	컴퓨터 제조업	o		o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o		o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o		o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o		o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		o
	166 사무용품	367 컴퓨터관련서비스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o		o
		401 사무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o		o
지급수수료	145 보험	351 생명보험	65110	생명 보험업	o		o
		352 비생명보험	65121	손해 보증업	o		o
	146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353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65122	보증 보험업	o		o
회의전시장임차비	147 부동산	355 부동산임대 및 공급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o		o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o		o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o		o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o		o
부대시설사용료	147 부동산	356 부동산관련서비스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o		o
PCO/PEO기획비	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6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o		o
광고홍보비	151 광고	363 광고	71310	광고 대행업	o		o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o		o
			71399	그 외 기타 광고업	o		o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o		o
문화서비스비	161 문화서비스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90190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o		o
		387 문화서비스(기타)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o		o
		389 영화상영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o		o
		390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90191	공연 기획업	o		o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o	
오락서비스비	162 오락서비스	391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o	
		392 기타오락서비스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o	o
부스임대비	154 기타사업서비스	368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o
		369 청소 및 소독서비스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o	o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o	o
인력운영비, 연사초청비	154 기타사업서비스	370 인력공급 및 알선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o	o
		371 기타 사업서비스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o	o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o	o
등록비, 입장료	163 사회단체	393 산업 및 전문단체	94100	산업 및 전문가 단체		o	
		394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o	
기타비용	164 수리서비스	395 자동차수리서비스	59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o	o	o
		396 기타개인수리서비스	95390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o	o	o
	165 개인서비스	397 세탁	96911	산업용 세탁업	o	o	o
		398 이용 및 미용	96110	이용 및 미용업		o	o
		399 가사서비스	97000	가구내 고용활동		o	o
	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61 법무 및 회계서비스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o	o
	154 기타사업서비스	371 기타 사업서비스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o	o
	156 교육서비스	376 교육기관(산업)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o	o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 된 교육기관		o	o
	154 기타사업서비스	371 기타 사업서비스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o	o

주1) 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2009); 한국은행(2010); Lee, Lee, & Yoon(2012)를 참조해서 작성함.

주2) O: MICE 주체별로 지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시함.

## [부록 3] 의료/한방의료 관광산업

- 2009년 정부의 의료법 개정은 의료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켜 의료관광 산업이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가 되는데 기여하였음.
- 의료관광의 발전에 힘입어 한국 고유의 의료관광형태인 한방의료관광 산업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발전가능성이 높은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산업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및 산업구조가 파악되어야 함.
- 다시 말해서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면서도 국내의 상황에 맞는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산업만의 새로운 산업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하지만 이와 같은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만의 새로운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특수분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추출하고,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 및 KSIC 코드와 연계시키는 통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산업분류는 일반 관광산업(숙박, 식음료, 쇼핑, 문화오락서비스, 관광교통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실시하였음.
- 이에 대한 세부적 통합표는 아래와 같음.

〈부록 표 3〉 의료/한방의료 관광산업

해당 I-O 섹터(소분류)	KSIC	항목명	의료관광(o)/ 한방의료관광(★)구분	연구진	전국사업체 조사(2009)	IRTS 국제기준
10	약용작물	10792 차류 가공업	★	o		
73	인삼식품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o	o	
76	기타 식료품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o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o	
81	비알콜성 음료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o	
155	의약품 제조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o	o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o	o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o	o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o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o	o		
321	의약품 도매	46441 의약품 도매업	o/★		o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o		o	
322	의약품 소매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o/★		o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o/★		o	
268	의료기기 제조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o	o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o	o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o	o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o	o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o	o		
		271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o		
		27320 안경 제조업	o	o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o	o		
		32012 메트리스 및 침대제조업	o	o		
		33302 재활훈련용 장비제조업	o	o		
321	의료기기 도매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o	o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o/★	o	o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도매업	o	o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o/★	o	o	

322	의료기기 소매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o/★	o	o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o	o		
371	기타 사업서비스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o/★		o	
379	의료 및 보건	86101	종합 병원	o	o		o
		86102	일반 병원	o	o		o
		86103	치과 병원	o	o		o
		86201	일반 의원	o	o		o
		86202	치과 의원	o	o		o
		86204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o	o		o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o	o		o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o			o
		86909	그외 기타 보건업	o	o		o
		86104	한방 병원	★	o		o
		86203	한의원	★	o		o
		86902	유사 의료업	★	o		
400	이용 및 미용 (기타 개인 서비스)	96113	피부미용업	o		o	
		96119	기타미용업	o		o	
		96122	마사지업	o		o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o		o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o		o	

## [부록 4]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간 비교

〈부록 표 4〉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간 비교

핵심 관광산업		
중분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 쇼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점</li> <li>○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li> <li>○ 관광 인증 쇼핑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매업(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li> </ul>

### ■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 핵심 관광산업부문은 관광진흥법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이하 기존분류)에서는 소매업으로 단일분류를 했으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이하 신규분류)에서는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인증 쇼핑업으로 세분화
- 관광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매업 분야만 핵심관광산업으로 고려
- 관광 인증 쇼핑업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 분야(예: 1st(퍼스트) 인증 상점)만 고려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이루어지는 소매활동은 부분적으로 관광산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분적용 관광산업에서 관광 비인증 쇼핑업으로 분류, 또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0)'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이 주로 소비하는 쇼핑품목 제시

관광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철도운송업</li> <li>○ 관광 도로운송업(시내순환 관광업,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 케도업)</li> <li>○ 관광 수상운송업(관광 유람선업, 크루즈업)</li> <li>○ 관광 항공운송업(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송업</li> <li>○ 여객 육상운송업(정기여객 운송업(시외버스 버스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운송업), 부정기노선 육상 여객운송업(택시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li> <li>○ 수상 운송업(해상운송업(외항여객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내륙수상운송업(내륙수상 여객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li> <li>○ 항공 운송업(정기항공 운송업, 부정기항공 운송업)</li> </ul>
--------	--	--

### ■ 관광 운수업

- 동일한 운송수단일지라도 관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분야만 핵심 관광산업으로 고려 나머지 부문은 부분적용 관광산업으로 처리
- 핵심 관광산업부문은 기존분류방식을 따르되 세분류에서 관광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산업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업은 부분적용 관광산업부문으로 이동 (예: 핵심부문에 '관광 철도운송업'으로 관광열차, 테마열차를 포함하며, 부분적용에는 '철도 운송업'으로 여객철도운송과 일반여객운송을 포함)

관광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업 (일반관광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li> <li>○ 휴양콘도미니엄업</li> <li>○ 관광 펜션업</li> <li>○ 일반 관광 숙박업(호스텔업, 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관광인증 모텔업,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자동차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업</li> <li>○ 여관업</li> <li>○ 휴양콘도 운영업</li> <li>○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li> <li>○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li> </ul>

### ■ 관광 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펜션업, 일반 관광 숙박업으로 세분화. 점차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관광 펜션업을 중분류로 분류. 일반 관광 숙박업에 레지던스 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관광 인증 모텔업 등을 포함시킴. 구체적으로 기존분류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나타난 숙박업을 분류에 제시(예: 산림휴양림업, 한옥체험업 등)
- 관광 인증 모텔업(예: 굿스테이 모텔)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 분야만 핵심 관광산업으로 고려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모텔업은 부분적으로 관광산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분적용 관광산업에서 관광 비인증 모텔업으로 분류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음식점업(관광 식당업)</li> <li>○ 관광 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관광 극장유흥업, 관광 공연장업(식사 · 주류 포함),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음식점업(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 운영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li> <li>○ 기타 음식점업(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li> <li>○ 주점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li> <li>○ 다과점업(제과점업, 찻집)</li> </ul>

### ■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 관광 음식점업(관광 식당업), 관광 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관광 극장유흥업, 관광 공연장업(식사 · 주류 포함),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세분화
- 구체적으로 관광 주점업은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용어 변경 및 재분류
- 관광 식당업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식당업 분야(예: 외래관광객 전문식당(한국관광공사 지정))만 핵심 관광산업으로 고려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식당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일반음식점업도 부분적으로 관광산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분적용 관광산업에서 기타 관광 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사업(일반 여행사업,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li> <li>○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사업(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li> <li>○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li> </ul>
<b>■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사업을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세분화</li> <li>-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구체적인 용어로 변경</li> </ul>		
<b>국제회의 및 전시업</b>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 및 전시 기획업</li> <li>○ 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업</li> </ul>	
<b>■ 국제회의 및 전시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분류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점점 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고려</li> </ul>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사적지 관리 운영업)</li> <li>○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관광지 운영업)</li> <li>○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li> <li>○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li> <li>○ 일반 관광 공연장업(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관광 공연 기획업)</li> <li>○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li> <li>○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자연공원 운영업</li> <li>○ 스포츠관련 서비스업(경기장 운영업, 경기 전문 종사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li> <li>○ 오락관련 서비스업(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li> </ul>
<b>■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일반 관광 공연장업(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관광 공연 기획업) 추가</li> <li>-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세분화(예: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li> <li>- 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세분화</li> </ul>		
카지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전용 카지노</li> <li>○ 내국인 출입 카지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락관련 서비스업(도박장 운영업)</li> </ul>
<b>■ 카지노업 : 기존분류에서 오락관련 서비스업의 일부로 제시된 내용을 관광진흥법과 우리나라의 카지노 현황에 맞게 재분류</b>		

## 상호의존 관광산업

중분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건물종합건설업(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li> <li>○ 관광 토목 건설업(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관광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종합건설업(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li> <li>○ 토목건설업(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li> </ul>

### ■ 관광 건설업

- 기존분류에서 관광과 관련이 없는 세분류를 삭제하고, 관광관련 건설업 부문으로 한정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용 의복 소매업</li> <li>○ 레저용 스포츠용품 소매업</li> <li>○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li> <li>○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매업(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li> <li>○ 소매업(그 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li> </ul>
---------------	--	--

### ■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 기존분류에서 소매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던 내용을 관광용품 및 레저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소매로 구체화해서 제시

관광 금융 및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여행자 보험)</li> <li>○ 금융서비스업(여행자 수표 발행, 환전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업</li> <li>○ 그 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li> </ul>
-------------	---	---

### ■ 관광 금융 및 보험업

- 기존분류의 용어를 관광산업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

레저 장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li> <li>○ 관광 및 레저장비 임대업(레저장비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캠핑카 임대업,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매업(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li> <li>○ 임대업(운송장비 임대업(승용 자동차 임대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li> </ul>
--------	---	---

### ■ 레저 장비업

- 기존분류의 중분류 상에 나누어져 있던 소매업과 임대업의 소분류를 ‘레저 장비업’과 관련된 단일 분야로 재편성

### 부분적용 관광산업

증분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부분관광 쇼핑업	○ 관광 비인증 쇼핑업	핵심과 동일
부분관광 운송업	○ 부분관광 육상운송업(도시간 운송업, 도시내 운송업,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시내외버스, 택시운송업) ○ 부분관광 수상운송업(수상운송업,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핵심과 동일
부분관광 숙박업	○ 청소년수련원 ○ 관광 비인증 모텔업	핵심과 동일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 부분관광 음식점업(기타 관광 일반음식점업) ○ 부분관광 주점업(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기타 관광 주점업)	핵심과 동일
부분관광 공연장업	○ 일반 공연장업(공연시설 운영업)	○ 공연관련 산업(공연장 및 예술관련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 ■ 부분관광 공연장업

- 기존분류에서 ‘공연단체’를 삭제

부분관광 서비스업	○ 관광정보 서비스업(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 전문기술 서비스업(관광사진업, 통역서비스업) ○ 기타 관광 서비스업(온천탕,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광고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욕탕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	---	--

#### ■ 부분관광 서비스업

- 기존분류의 용어를 관광산업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

## 관광지원 산업

중분류	신규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존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 연구 개발업	○ 관광 연구 개발업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관광 연구 개발업

- 기준분류에서 제시된 범위를 관광 분야로 한정

관광 공공기관	○ 문화 및 관광행정 ○ 관세행정 ○ 외무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문화 및 관광행정, 노동 및 산업진흥행정 ○ 외무, 국방 및 경찰행정(외무행정, 국방행정, 경찰)
------------	---	---

## ■ 관광 공공기관

- 관광과 큰 관련이 없는 분류 삭제(예: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국방행정)
- 관광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예: 경찰 ->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관광 교육서비스 업	○ 교육기관(관광 전문 교육기관(대학교 이상), 관광 전문 교육기관(고등학교)) ○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교)
------------------	---	---------------------

## ■ 관광 교육서비스업

- 교육기관을 세분화
-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추가

관광 단체	○ 회원단체(관광전문가단체, 여행클럽) ○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 회원단체(산업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그 외 기타 회원단체)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관광 단체

- 기준분류에서 제시된 범위를 관광분야로 한정

## <참고문언>

- 관광진흥법(2012).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363&efYd=20120514#0000>.
- 네이버 지식사전 (2012).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046&mobile&categoryId=520>.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8 관광통계 국제 권고안(IRTS 2008) 번역 및 해설』.
- 세계관광기구(WTO)(1982). 관광의 정의.
- 이충기(2011). 『관광응용경제학』. 서울: 대왕사.
- 통계청(2008).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관광공사(2009). 『MICE 산업통계조사 연구』.
- 한국관광학회(2009). 『관광학총론』. 서울:백산출판사.
- 한국은행(2010). 『2008년 산업연관표』.

- Goeldner, C. R., & Ritchie, J. R. B. (2006).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10th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Lee, C. K., Lee, M. J., & Yoon, S. H. (2012).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businesses, us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A case study of the Daejeon convention center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in press, doi:10.1080/10941665.2012.658414